

## 공용부분(하역장 옥상 등) 사용이용신청서

목적물의 표시	장 소	동 하역장(옥상) 번		
	면 적	m <sup>2</sup> (평)		
사용계약기간		년 월 일 ~ 월 일		
사용신청인	회사명		동 · 호수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팩스	
	담당자		핸드폰	

### ◎사용계약 시 유의사항

1. 사용기간 : 사용기간은 최장 6개월 단위로 임대 계약한다. (옥상 1년)
2. 사 용 료 : 매월 m<sup>2</sup>당 @₩3,300 (평당 @₩10,000) VAT별도로 선납한다.
3. 사용면적 : 하역장 최대점유는 2칸 《 1칸 : 11.6m<sup>2</sup> - 3.5평 》 이하로 한다.
4. 사용우선순위 :

① 해당동 우선 (선착순)

② 최대 6개월 사용 후 신청업체가 있을 경우 신규업체 우선.

### 5. 책임과 배상

“을”인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임대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치물의 훼손, 도난, 분실 등 어떠한 재해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신청일 :    년    월    일

부천테크노파크2단지 입주사대표회의 귀중

# 공 고

제목 : 공용부분(하역장) 이용 입주사 사용계약 시행의 건.

우리 단지는 공용부분의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공용부분임시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하역장 일부 공간에 장기간 적재하는 일부 업체가 있어 공동생활에 반하므로 이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구획을 나누어 평당 @ ₩10,000의 장소 사용료에 대해 적정하다가 8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제100차 입주사대표회의에서는 본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는바, 각 입주사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용기간 : 사용기간은 최장 6개월 단위로 임대 계약한다.
2. 사 용 료 : 매월 m<sup>2</sup>당 @₩3,300 (평당 @₩10,000) VAT별도로 선납한다.
3. 사용면적 : 최대점유는 2칸 ( 1칸 : 11.6m<sup>2</sup> ) - 7평 이하로 한다.
4. 사용우선순위 :

①해당동 우선 (선착순)

②최대 6개월 사용 후 신청업체가 있을 경우 신규업체 우선.

5. 책임과 배상

“을”인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임대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치물의 훼손, 도난, 분실 등 어떠한 재해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부천테크노파크2단지 입주사지원본부장

# 부천테크노파크2단지 입주사대표회의 공용부분 ( 하역장 및 옥상 등 ) 이용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천테크노파크2단지 내 공용부분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입주업체의 안전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입주사의 공동이익을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이용신청 및 사용료】

- ① 하역장 등 사용하고자하는 입주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사지원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 용 료 : 매월  $\text{m}^2$ 당 @₩3,300 (평당 @₩10,000) VAT별도로 6월 또는 1년 선납한다.

## 제3조 【사용기간】

- ① 사용기간은 최장 6개월 단위로 임대 계약한다.
- ② 사용우선순위 : 1. 해당동 우선 (선착순) 2. 최대 6개월 사용 후 신청업체가 있을 경우 신규업체 우선.

## 제4조 【사용면적】

최대점유는 2칸 ( 1칸 :  $11.6\text{m}^2$  ) - 7평 이하로 한다.

## 제4조 【책임과 배상】

임차인(사용자)은 사용기간 중 임대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치물의 훼손, 도난, 분실 등 어떠한 재해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입주사대표회의 및 지원본부(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시행 : 2008. 05. 22